

## CODEX 식품표시 분과위원회 제28차 회의결과

이 희 정 / 보건복지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연구위원

### I. 회의개요

#### □ 회의기간 및 장소

- 2000. 5. 6(토)~12(금), 캐나다 오타와
- 회의참석자(275명) : 우리나라를 포함한 44개국 및 30개 국제 읍저버기구

#### □ 주요 의제

- 생명공학기술용식품의 표시에 관한 권고 초안(포장식품표시에 관한 일반 규격 개정안)
- 건강강조표시 사용에 관한 권고 초안
- 영양표시지침서에 관한 개정 초안(영양소 목록)

#### □ 회의 참석국

- 우리나라를 포함한 44개국 및 Consumers International 등 30개 국제 읍저버기구, 총 275명 참석

#### □ 회의결과 개요

- 본 분과위원회는 국가간 식품표시기준

을 일치시킴으로써 식품의 전전성을 높이고 국가간 교역을 원활히 하고자 하며, 또한 영양표시 및 건강강조표시 등 각국의 표시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회의는 제28차 회의로서 생명공학기술용식품(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 건강강조표시(유용성표시) 등 현재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의제들이 논의되었다.

- 생명공학기술용식품의 표시에 관한 권고 초안(포장식품표시에 관한 일반 규격 개정안)
  - 「Section 2. 정의」 Part는 내년에 Step 6로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 「Section 5. 부가적인 의무표시사항」 Part는 Option 1, 2, 3를 포함, 각국의 의견수렴후 Working Group이 재작성한 문서를 내년에 Step 3로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 유전자변형 또는 유전자재조합 용어 사용과 관련하여 국가마다 선호하는 용어가 다르므로 “유전자변형/재조합 (genetically modifying/engineered)”으로 합의하고
  - “현대 생명공학(modern biotechnology)”

용어에 대한 논의에서 biotechnology는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지적에 따라 논의 끝에 “유전자변형/재조합등 특정기술(certain techniques of genetic modification/engineering)”로 합의. 따라서 지침서의 제목은 “유전자변형/재조합등 특정기술응용식품에 관한 권고 초안”으로 수정하기로 하였다.

- 건강강조표시 사용에 관한 권고 초안
  - Working Group에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내년에 Step 3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캐나다가 주재하는 Working Group 회의를 내년회의 바로전에 개최하기로 하였다.
  - 독립적으로 논의중이던 본 권고초안을 기존의 영양강조표시 사용에 관한 지침서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존의 지침서 제목을 “건강 및 영양강조표시 사용에 관한 지침서”로 개정하기로 하였다.

## II. 회의 의제

- 의제 1 의제 채택
- 의제 2 총회 및 타 분과위원회에서 회부된 사항들
- 의제 3 Codex 규격 중 표시규정 검토
- 의제 4 유기생산식품의 생산, 가공, 표시 및 판매에 관한 지침서 안(축산분야)
- 의제 5 생명공학기술응용식품의 표시에 관한 권고 초안(포장식품표시에 관한 일반규격 개정안)
- 의제 6 포장식품표시에 관한 일반규격 개정안(분류명)
- 의제 7 영양표시지침서에 관한 개정 초안(영양소 목록)
- 의제 8 건강강조표시 사용에 관한 권고 초안
- 의제 9 “채식주의자” 용어사용에 관한 지침서 초안
- 의제 10 기타사업, 앞으로의 작업과 차기 회의일시 및 장소
  - 소비자를 오도하는 강조표시에 관한 논의문서
  - 원재료 함량표시에 관한 논의문서

- 의제 11 보고서 채택

## III. 주요의제 논의결과

### 1. 생명공학기술응용식품 표시에 관한 권고초안 (의제 5)

#### 1) 의제내용

- CODEX 식품표시분과위원회의 “생명공학 응용식품 표시에 관한 권고 초안”은 이미 규격으로 설정되어 있는 ‘포장식품의 표시에 관한 일반 규격’ 가운데 「Section 2. 정의」 및 「Section 5. 부가적인 의무표시 사항」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 제27차 식품표시분과위원회(99. 4)에서는 생명공학 응용식품 표시에 관한 Working Group(우리 나라 포함한 23개 회원국, EU, 9개 국제기구)을 마련한 바 있으며,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소규모 Drafting Group(일본, 미국, 브라질, 호주, EU, 캐나다)을 구성하여 문서를 재작성하였다.
- 부가적인 의무표시사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Option 1 : 현대 생명공학 응용식품이 기존식품과 비교하여 구성성분(composition), 영양가(nutritional value) 또는 용도(intended use)가 기존식품과 다른 경우에 그 다른 특성을 표시
  - Option 2 : 현대 생명공학응용식품 중 유전자기술로 유래한 DNA 또는 단백질이 존재하는 경우와 기존식품과 다른 경우에 그 생산방법을 표시하고, 다른 특성이 있을 경우 추가로 표시

#### 2) 주요 논의결과

- 「Section 2. 정의」 Part
  - “유전자[변형]/[재조합]체(genetically [modified]/[engineered] organisms)”

용어 사용과 관련하여 EU, 호주, 노르웨이 등은 'modified'를 미국은 'engineered'를 브라질, 캐나다 등은 둘다 수용 가능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논의 끝에 국가마다 선호하는 용어가 다르므로 변형/재조합 둘다 두기로 하고 braket 을 삭제하기로 함. 따라서 Codex 에서는 '유전자변형/재조합'이 공식용어로 확정되었다.

권고초안의 제목과 내용 전반에 사용된 "현대 생명공학(modern biotechnology)"이라는 단어에 대하여 프랑스, CI 등은 biotechnology 는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지적에 따라 논의 끝에 "유전자변형/재조합등 특정기술(certain techniques of genetic modification/engineering)"로 합의하였다.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obtained through gene technology]" 의 braket을 삭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정의 Part에 새롭게 정의된 "더이상 동등하지 않은(no longer equivalent)/상당히 다른(differ significantly)"에 관한 논의에서 CI, 노르웨이, 인도 등은 이 개념이 표시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캐나다, 미국, 호주 등은 Section 5에 이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존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EU는 'no longer equivalent'를 미국, 뉴질랜드 등은 'differs significantly'를 주장함. 논의결과 문장전체를 braket으로 두고 더 논의하기로 하였다.

미국, 브라질, 노르웨이 등은 'Section 2. 정의' Part를 'Section 5. 부가적인 의무표시사항' Part와 동일하게 논의하기 위하여 Step 3로 return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의무 표시사항이 정의부분에 비해 중요도가 높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지금과 같이 별도로 진행시키기로 하였다.

⇒ 위의 내용을 포함하여 내년에 Step 6  
로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

- 「Section 5. 부가적인 의무표시사항」  
Part
  - GM 식품의 수입국, 수출국 그리고 소비자단체들의 입장차이가 뚜렷하여 미국을 위시한 수출국은 Option 1을 EU를 위시한 수입국은 Option 2를 그리고 소비자단체들은 Option 3를 지지하는 양상을 보였다.
  - Option 1(구성성분(composition), 영양가(nutritional value) 또는 용도(intended use)가 기존식품과 다른 경우에 그 다른 특성을 표시)을 지지하는 국가는 미국, 남아프리카, 멕시코, 브라질, 태국
  - Option 2(유전자기술로 유래한 DNA 또는 단백질이 존재하는 경우와 기존식품과 다른 경우에 그 생산방법을 표시하고, 다른 특성이 있을 경우 추가로 표시)를 지지하는 국가는 일본, EU, 한국, 이탈리아, 폴란드, 호주,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스위스, 프랑스, 벨기에
  - Option 3(모든 GM 유래제품에 표시)를 지지하는 국가는 인도, 노르웨이, CI(Consumer International), IFORM, RAFI, IACFO
  - 미국은 소비자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유무역을 용이하게 하는 표시방법은 Option 1이라고 주장하였다.
  - EU는 threshold와 관련하여 GMO 의 일반적인 허용수준(general tolerance level)이 아닌 비의도적 혼입(adventitious contamination)을 위한 것이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 일본은 유전자재조합식품표시를 의무표시에 해당하는 일반규격(standard)이 아닌 개별 지침서(separate guideline)로 논의할 것을 제안하여 캐나다, 아르헨티나, 미국, 멕시코 등은 일본의 제안을 좀더 논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스위스 등은 WTO에서 standard 및 guideline은 모두 동등하게 취급된다고 지적하였으

나 이러한 일본의 제안도 고려하기로 하였다.

- 대부분의 국가들이 표시문제와 함께 GMO의 분석방법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의장은 CCMAS(Codex 시료채취분과위원회), 생명공학기술용식품에 관한 Task Force와 긴밀히 협조할 것을 밝혔으며 GMO의 검출방법에 대한 연구를 CCMAS(2001. 2월 개최예정)에 요청하기로 하였다.

⇒ Option 1, 2, 3가 포함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 수렴후 Working Group이 제작성한 문서를 내년에 Step 3로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

### 3) 우리대표단 활동

#### ○ < Section 2 >

- 현대 생명공학기술의 정의를 더 명확히 할 수 있도록 “[obtained through gene technology]”의 bracket 삭제 지지하였으며 “differs significantly”보다는 “no longer equivalent”의 표현이 정확하므로 “differs significantly”의 삭제지지 및 기존식품과 다른 기준의 제시가 필요하므로 “[having regard to accepted limits of natural variation for that food or food ingredient]”의 bracket 삭제를 지지하였다.

#### ○ < Section 5 >

- 한국정부는 현대 생명공학 응용식품의 안전성 문제와는 별개로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생명공학 응용식품에 외래 DNA 또는 단백질이 존재하는 경우 그 생산방법의 표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결론적으로 한국정부는 권고안 Section 5의 “option 2”를 지지하였으며 비의도적 GMO 혼입문제의 해결을 위해 “threshold level”의 조속한 설정을 적극 지지하였다.

#### ○ < Others >

- 아울러 유전자기술(gene technology)로 유래한 DNA 또는 protein의 test method의 향상 및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test method의 마련을 위해 식품표시분과위(CCFL)가 CCMAS(Codex Committee on Methods of Analysis and Sampling)에 이 문제에 대한 조속한 검토를 요청하였다.

## 2. 건강강조표시사용에 관한 권고초안 (의제 8)

### 1) 주요 논의결과

#### ○ Working Group 논의사항

- 네모안의 서문 및 ‘건강강조표시’의 정의부분에 합의하였으며,
- “영양소기능강조표시”를 영양강조표시에서 삭제하고 건강강조표시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 “질병발생위험감소강조표시” 및 Section 7의(건강강조표시조건, 표시방법) 조항들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 본 작업은 기준의 영양강조표시사용에 관한 지침서를 개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 본회의 논의사항

- Codex 건강강조표시 지침서 설정 자체를 우려하는 의견이 표명되었는데 그 이유는 적절한 소비자교육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건강강조표시가 소비자를 상당히 오도, 혼동할 수 있으며, 건강강조표시에 관한 규정은 각국마다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국제규격 설정을 반대하였다
- 건강강조표시 가운데 질병과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는데 동의하였다.
- 건강강조표시를 위한 조건 및 표

시방법에 대해서도 좀 더 명확한 규정을 위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였다.

- 또한 본 지침서의 논의에 있어서 공중보건, 소비자들의 혼동,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등의 요소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 Working Group에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내년에 Step 3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캐나다가 주재하는 Working Group 회의를 내년 회의 바로전에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독립적으로 논의중이던 본 권고초안을 기존의 영양강조표시 사용에 관한 지침서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존의 지침서 제목을 “건강 및 영양강조표시 사용에 관한 지침서”로 개정하기로 하였다.

## 2) 우리대표단 활동

- 건강강조표시는 자국의 영양정책을 포함한 건강정책과 일치하여야 하며 그러한 보건정책을 뒷받침하는 건강강조표시만이 허용되어야 하며, 건강강조표시는 특정식품과의 관계가 아니라 전체식사의 일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 「질병의 발병위험성 감소와 관련된 강조표시(reduction of disease risk claims)」는 식품표지에 질병의 명칭을 표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안임을 표명하였다.

## 3. 영양표시 지침서에 관한 개정 초안 (3.2항 - 영양소 목록)(의제 7)

### 1) 의제내용

- 기존의 영양소외 당류, 섬유소, 포화지방, 나트륨 가운데 한가지 이상에 대해 영양강조표시를 하였을 경우, 당류, 섬유소, 포화지방,

나트륨의 함량을 표시도록 하는 안을 제23차 총회에 5단계로 상정하였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3단계로 재 회부되었다.

### 2) 주요 논의결과

- 현재 논의중인 영양소이외에 콜레스테롤, 포화지방, 다가불포화지방산, monounsaturated acids, trans-fatty acid의 함량표시 및 ‘섬유소’ 용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총 식이섬유소에 대한 언급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자는 의견이 제안되었다.
- 논의 결과 지침서의 3.2.1.2항은 그대로 유지하고 당류, 섬유소, 포화지방, 나트륨에 대한 부가적인 영양소표시는 3.2.2항으로 새롭게 추가하고 현 지침서의 3.2.2항은 3.2.3항으로 하고, 현 지침서의 3.2.3항에 콜레스테롤에 대한 표시도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 현 단계에서 개정된 문서를 5단계로 상정하는데 대한 합의를 도출할 수 없으며 본 회의에서 제안된 개정내용들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였으며, 회원국에게 문제점들을 명확히 하고 논의과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회의전에 자세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 IV. 관찰 및 평가

### 1. 생명공학기술응용식품 표시에 관한 권고초안 (의제 5)

- 금번 회의에서는 정의 Part에 비해 중요도가 높은 의무표시사항 Part에 대하여 세부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각국의 입장을 표명하는데 그침. 따라서 Option 1, 2, 3를 모두 고려하여 재작성한 문서를 내년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 바, 내년에는 표시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예상된다.

- 그러나 Option 1&2를 지지하는 국가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합의를 도출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정의 Part는 상당한 진전을 보여 많은 부분에서 합의를 도출하였는 바, 특히 유전자변형/재조합 용어를 병행하여 사용하기로 합의한 것은 각국마다 선호하는 용어가 다르다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그 의의가 크다고 본다.
- 앞으로 분석방법, threshold 설정등의 문제는 Codex 타 분과위원회(CCMAS, 생명공학기술응용식품에 관한 Task Force)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이므로 타 분과위원회의 논의과정을 예의주시하여야 할 것이다.

## 2. 건강강조표시사용에 관한 권고초안 (의제 8)

- 건강강조표시에 관한 국제적인 지침서 설정을 반대하는 원론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국가가 있는 반면 건강강조표시를 소비자 교육도구로 이용하는 등 그 잇점을 강조하는 국가도 적지 않다.
- 특히 건강강조표시 가운데 질병과 관련된 표시는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등은 가장 개방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 모든 식품에 건강강조표시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식품에 질병관련 표시를 할 경우 그 식품을 약품으로 간주하는 국가도 있어 국가간 입장차이가 뚜렷하다.

## V. 결 언

### 1. 생명공학기술응용식품 표시에 관한 권고초안 (의제 5)

- 향후 Working Group 및 차기 회의에서 GM식품의 표시방안에 대하여 본격적인 논의가 예상되는 바, 우리나라

- 는 안전성 문제외는 별개로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GM식품에 생산방법의 표시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본입장으로 구체적인 대응방안 마련하고,
- 특히, 내년 7월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 시행에 대비하여 표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분석방법 및 샘플링법의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에 대하여 Codex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나라 기본입장 및 대응방안 마련과 아울러 이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동향을 파악하는 동시에
- 아울러, GMO의 표시제 업무가 우리청과 농림부로 이원화되어 있으므로 국내 제도시행 및 국제적 대응과정 양 부처가 긴밀히 협조하여 공동대응이 필요하다.

## 2. 건강강조표시사용에 관한 권고초안 (의제 8)

- 우리나라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있어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는 금하고 있으며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는 혼위표시로 간주함. 다만, 특수영양식품, 건강보조식품, 인삼제품의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유용성표시가 가능하다.
- 향후 Working Group 및 차기 회의에서 건강강조표시 범위, 표시조건,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 본격적인 논의가 예상되는 바, 우리나라의 건강강조표시에 대한 기본입장을 정립하여 구체적인 대응방안 마련하고,
- 현재 유용성 표시 관련 업무는 복지부 업무분장으로 되어 있으나 그 관리등은 우리청이 담당하고 있는 바, 유용성 표시 관련 국내 제도시행 및 국제적 대응과정에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

## 별첨 1

## 회의결과 요약

의제	단계	조치기관	관련문서 (ALINORM 01/22)
유기식품 지침서안(축산분야)	8	정부 24차 CAC	29항 별첨 II
표시에 관한 권고초안/생명공학 (알레르겐)	8	정부 24차 CAC	37항 별첨 III
급속냉동생선스틱에 관한 규격개정안(생선속/함량)	7	CCFFP 29차 CCFL	10항
유기식품 지침서안 (꿀벌 및 첨가물)	6	정부 29차 CCFL	29항 별첨 IV
표시에 관한 권고초안/생명공학 (Section 2-정의)	6	정부 29차 CCFL	38항 별첨 V
일반표시규격의 개정초안(분류명)	6	정부 29차 CCFL	53항 별첨 VI
표시에 관한 권고초안/생명공학 (Section 5-부가의무표시사항)	3	캐나다 정부 29차 CCFL	49항
영양표시에 관한 지침서 개정초안	3	정부 29차 CCFL	64항 별첨 VII
건강강조표시 사용에 관한 권고초안	3	정부 29차 CCFL	73항 별첨 VIII
“채식주의자” 용어 사용에 관한 지침서 초안	3	집행이사회	77항
표시규정(수용성 코코넛제품)		CCPFV	19-21항
새로운 제안된 작업 1) 원재료함량표시 2) 토양조절제 및 촉진제로 사용 이 가능한 물질: 개정-급행수순	1/2/3	집행이사회 사무국 정부 29차 CCFL	1) 78-81항 2) 86-87항

## 별첨 2

### 유전자변형/재조합등 특정기술응용 식품 및 식품원재료 표시에 관한 권고초안 (포장식품표시에 관한 일반규격 개정안) (6단계)

#### Section 2. 용어의 정의

본 규격의 목적상 :

“유전자변형/재조합등 특정기술응용 식품 및 식품원재료”란 유전공학기술에 의한 유전자변형체/재조합체로 구성되거나 유전자변형체/재조합체가 포함된 식품 및 식품원재료 또는 유전공학기술에 의한 유전자재조합체를 포함하지는 않지만 그로부터 생산된 식품 및 식품원재료를 말한다.

“유기체”란 유전물질을 복제하거나 전달할 수 있는 생물체를 말한다.

“유전자변형체/재조합체”란 증식이나 자연적인 재조합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유전공학기술로 유전물질이 변화된 유기체를 말한다.

이러한 기술의 예는 다음의 것들이 포함되나 여기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

- vector system을 사용하는 재조합 DNA 기술
- 유기체 외부에서 제조된 유전물질을 유기체에 직접 도입하는 기술
- 자연적인 생리, 생식 또는 재조합 수준을 넘어서는 세포융합(원형질융합 포함) 또는 교배기술, 이 경우 공여 세포/원형질은 동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공여체/수여체가 상기 기술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예외적인 기술의 예는 다음의 것들이 포함되나 여기에 한정되지 않는다 :

- 체외수정

- 접합, 형질도입, 형질전환, 기타 자연적인 과정
- polyploidy induction
- 돌연변이
- 공여 세포/원형질이 동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의 세포융합(원형질융합 포함) 또는 교배기술

[“더이상 동등하지 않은” 또는 “상당히 다른”이란 평가된 특성이 기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특성과 다르다는 것으로 해당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자연적인 변이 폭을 고려하여 적절한 분석데이터 등 과학적 평가로 증명된 현대 생명공학응용 식품 또는 식품원재료를 의미한다]

#### 별첨 3

### 유전자변형/재조합등 특정기술응용 식품 및 식품원재료 표시에 관한 권고초안 (포장식품표시에 관한 일반규격 개정안) (3단계)

#### Section 5. 부 가의무 표시사항

##### Option 1

1. Section 2에 정의된 것과 같은 현대 생명공학응용 식품 또는 식품원재료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상응하는 기존 식품 또는 식품원재료와 더 이상 동등하지 않을 경우[또는 상당히 다를 경우]
  - 조성 또는
  - 영양가 또는
  - 사용의도상응하는 기존 식품 또는 식품원재료와 다르게 된 특성이나 성질을 표시에 분명하게 나타내어야 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적용된다 :

- a) 식품 또는 식품원재료의 조성이 상응하는 기존 식품 또는 식품원재료와 더 이상 동등하지 않다면[또는 상당히 다르다면] 일반규격 4.1 및 4.2.2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 조성을 알릴 수 있는 부가적인 단어 또는 문구를 식품 또는 식품원재료 명칭과 함께 또는 그 가까이에 표시하여야 한다.
- b) 식품 또는 식품원재료의 영양가가 상응하는 기존 식품 또는 식품원재료와 더 이상 동등하지 않다면[또는 상당히 다르다면] 일반규격 4.1 및 4.2.2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소비자에게 변화된 영양소 함량을 알릴 수 있는 부가적인 단어 또는 문구를 식품 또는 식품원재료 명칭과 함께 또는 그 가까이에 표시하여야 한다. 부가적으로 영양소 표시는 CODEX 영양표시지침서에 따라 표시되어야 한다.
- c) 저장, 조제, 조리등의 방법이 상응하는 기존 식품 또는 식품원재료와 더 이상 동등하지 않다면[또는 상당히 다르다면] 정확한 사용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상응하는 기준 식품에는 존재하지 않고 특정 인구집단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3. 현대 생명공학용용 식품 및 식품원재료가 4.2.1.4항에 목록화되어 있는 과민증 유발 물질에서 전이된 알레르겐을 포함할 경우 그 알레르겐을 표시하여야 한다.
4. [표시로 알레르겐의 존재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그 알레르겐을 포함하는 식품은 유통되어서는 안된다.]
5. 상응하는 기준 식품에는 존재하지 않는 4.2.2항에 언급되어 있는 물질이 현대 생명공학용용 식품에 존재할 경우 이를 항상 표시하여야 한다.
- Option 2
- 다음에 해당하는 Section 2에 정의되어 있는 현대 생명공학용용 식품 또는
- 식품원재료는 그 생산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
- [재조합 DNA 기술에 의한] 유전자재조합체를 포함하거나 구성된 식품 또는 [주요] 식품원재료
  - 유전자재조합체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상응하는 기존 식품 또는 식품원재료와 더 이상 동등하지 않을 경우[또는 상당히 다른 형태일 경우] 유전자재조합체로부터 생산된 식품 또는 [주요] 식품원재료  
(특히, 식품 또는 식품원재료가 유전적 재조합 결과로 인한 단백질 또는 DNA를 포함하는 경우)
- 또는
- [유전적 재조합 결과로 인한 단백질 또는 DNA를 포함하는 식품 또는 [주요] 식품원재료]
- 특히, 식품 또는 식품원재료가 [상응하는] 기준 식품 또는 식품원재료와 더 이상 동등하지 않도록 [또는 상당히 다른 형태로] 하는 조성, 영양가[또는 영양효과], 사용의도 등과 같은 식품의 특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표시사항이 적용될 것임:
- 식품 또는 식품원재료의 조성이 상응하는 기준 식품 또는 식품원재료와 더 이상 동등하지 않을[또는 상당히 다른 형태일] 경우, 일반규격 4.1 및 4.2.2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조성을 알릴 수 있는 부가적인 단어 또는 문구를 식품 또는 식품원재료 명칭과 함께 또는 그 가까이에 표시하여야 한다.
  - 식품 또는 식품원재료의 영양가가 상응하는 기준 식품 또는 식품원재료와 더 이상 동등하지 않을[또는 상당히 다른 형태일] 경우, 일반규격 4.1 및 4.2.2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조성을 알릴 수 있는 부가적인 단어 또는 문구를 식품 또는 식품원재료 명칭과 함께 또는 그 가까이에 표시하여야 한다. 부가적으로 영양소 표

- 시는 CODEX 영양표시지침서에 따라 표시되어야 한다.
- 저장, 조제, 조리방법 등이 상용하는 기존 식품 또는 식품원재료와 더 이상 동등하지 않을[또는 상당히 다른 형태 일] 경우, 정확한 사용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상용하는 기존 식품에는 존재하지 않고 특정 인구집단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상용하는 기존 식품에는 존재하지 않고 윤리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4. 현대 생명공학용용 식품 및 식품원재료가 4.2.1.4항에 목록화되어 있는 과민증유발 물질에서 전이된 알레르겐을 포함할 경우 그 알레르겐을 표시하여야 한다.
  5. [표시로 알레르겐의 존재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그 알레르겐을 포함하는 식품은 유통되어서는 안된다.]
  6. 상용하는 기존 식품에는 존재하지 않는 4.2.2.2항에 언급되어 있는 물질이 현대 생명공학용용 식품에 존재할 경우 이를 항상 표시하여야 한다.
  7. [허용기준치  
Drafting Group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논의하기로 동의함:
    - [ 현대 생명공학용용 식품 또는 식품원재료 존재에 대한 식품 또는 식품원재료의 허용기준치 설정. 이 기준치 이하에 해당할 경우에는 표시가 요구되지 않을 것임]
    - [ 현대 생명공학용용 식품 또는 식품원재료가 식품 또는 식품원재료에 비의 도적 또는 우연적으로 포함되는 것에 대한 최소허용기준치 설정]]
8. [다음과 같은 표지의 문구는 현대 생명공학용용 식품 또는 식품원재료가 존재하는 것을 구별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선택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포함된다:]
    - (“유전자재조합으로 생산된 (물질명)”, “유전자재조합”) 예. “유전자재조합으로 생산된 대두”
    - 원재료가 원료에서 생산된 것으로써 목록화되어 있는 경우, (“(원료)유전자재조합”) 예. “옥수수(유전자재조합) 밀가루”
    - 원재료가 분류명으로 표시될 경우, (“유전자재조합 (원료)로 생산한 (원재료명칭) 포함”) 예. 전분(“유전자재조합 옥수수에서 생산된 전분 포함”)
    - (“식품명(특성-유전자재조합)”) 예. “대두(고 올레익산-유전자재조합)”
    - (“식품/식품원재료명(유전자재조합)” 예. “대두(유전자재조합)”
    - (“식품/식품원재료명(유전자재조합 식품/식품원재료(분리되지 않음))”) 예. “대두(분리되지 않은 유전자재조합 대두)”
    - (“([현대] 식물 생명공학용용 종자로부터 성장된)”)
    - (“[현대] 식물/동물 생명공학용용 제품”)
    - [현대 생명공학용용 제품]
    - [기타]]
  9. 상기 제8조의 문구는 표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특히,
    - 복합원재료로 구성된 식품의 경우, 제8조의 문구는 원재료목록 또는 원재료 바로 다음에 팔호로 표시하여야 한다. 선택적으로 해당 원재료에 별표로 표시하고 해당 문구를 원재료 목록 바로 다음에 문구로 표시할 수도 있다.

- 단일 원재료 식품 또는 원재료 목록이 없는 경우, 해당 정보를 식품표지에 정확하게 나타내야 한다.

#### 별첨 4

#### 건강강조표시 사용에 관한 지침서 초안 (3단계)

건강강조표시는 국가영양정책과 일치하여야 하며 그 정책을 지지하여야 한다. 건강강조표시는 소비자 특별 교육이 [수반/뒷받침] 되어야 한다. 강조표시에 관한 Codex 일반지침서의 3.4항에 규정되어 있는 건강강조표시는 금지된다.

### 2.2

건강강조표시는 식품 또는 식품성분과 건강과의 관련성을 서술, 연상, 암시하는 표시이다.

건강강조표시는 다음을 포함한다:

2.2.1 영양소기능강조표시(nutrient function claim)는 신체 성장, 증진 및 정상적인 기능에 대한 해당 영양소의 생리학적 역할을 나타내는 영양강조표시이다.

(예: “칼슘은 강한 뼈와 치아의 발달을 돋운다”)

“철분은 적혈구 형성의 한 인자이다”

“엽산함유: 엽산은 태아의 정상적인 성장을 돋운다.”

2.2.2 향상된 기능강조표시(enhanced function claim)는 식품 또는 식품성분의 전체 식사를 통한 소비가 생리학적 기능 또는 생물학적 활동에 특별한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와 관련되며 여

기에는 영양소기능강조표시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강조표시는 건강 또는 [건강상태]에 이로움 또는 기능 향상 또는 건강 개선 또는 유지등과 관련된다.

(예: “특정 비소화성 oligosaccharide는 장내 특수 박테리아의 성장을 증진시킨다”  
“엽산은 혈장호모시스테인 수준을 낮춘다”

[2.2.3 질병위험성감소관련 강조표시(reduction of disease risk claims)는 식품 또는 식품성분의 전체 식사를 통한 소비가 질병[또는 건강관련 상태] 발생의 위험감소와 관련된 표시를 말한다. 본 강조표시는 다음 2가지로 구성되어야 한다.

- 1) 일반적으로 알려진 식사와 건강과의 관계에 관한 정보
- 2) 그러한 관계와 관련이 있는 제품의 구성성분에 관한 정보

위험감소란 질병[또는 건강관련 상태]의 원인이 되는 주요한 위험인자를 상당히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질병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인자 가운데 한가지를 변화킴으로써 효과를 나타낼 수도 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위험감소 강조표시는 적절한 용어사용 및 기타 다른 위험요인들과의 관련성등의 언급등을 통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질병예방과 관련된 강조표시를 해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예: “철분은 빈혈의 위험을 낮추는 것을 도울 수 있다. A는 고철분의 급원이다”

“포화지방이 낮은 식사는 심장병 발생 위험을 낮출수도 있다. B는 포화지방의 함량이 적다.”

“엽산은 여성의 신경계결함을

가진 아이를 가질 위험을 낮출수도 있다. 비타민 C는 혈산함량이 높다”

“충분한 칼슘섭취는 노년기에 골다공증 위험을 낮출수도 있다. D는 칼슘함량이 높다”)

## 7 : 건강강조표시

### 7.1

건강강조표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7.1.1 건강강조표시는 과학적 증거를 근거로 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알려진 과학적 데이터로 인정된 것으로써 강조표시된 효과를 충분히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과학적 증거는 새로운 사실을 이용할 수 있음에 따라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7.1.2 모든 건강강조표시는 해당제품이 판매되는 국가의 해당 기관에 의해 수락되거나 수락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7.1.3 식품 또는 식품성분에 관한 강조표시는 전체식사의 일부로 표현되어야 한다]

7.1.4 강조표시된 효과는 전체식사를 통하여 섭취가 가능한 양을 소비함으로써 얻을수 있어야 한다.

7.1.5 건강강조표시된 효과가 식품의 성분에서 기인한 경우, 해당식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i) 해당식품의 소비가 권장되는 경우에는 해당성분의 함량은 “함유” 또는 “고”이어야 한다.
- (ii) 해당식품의 소비가 권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성분의 함량은 “저”, “감소” 또는 “무”이어야 한다.

영양소함량강조표시 및 비교강조표시의 조건은 “고”, “저”, “감소”, “무”의 함량기준을 결정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7.1.6 Codex 영양표지자침서에 영양소기준치가 설정되어 있는 영양소 또는 각국의 공식적인 식사지침서에 언급되어 있는 영양소만이 영양소기능강조표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 7.2

건강강조표시는 특정 강조표시 사용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체계를 가져야 한다. 여기에는 질병(또는 건강상태)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을 정도로 해당 영양소를 함유한 식품에는 어떠한 강조표시도 금지할 수 있는 해당 국가기관의 권한도 포함된다. 건강강조표시가 특정 식품의 과다한 소비를 조장하거나 좋은 식습관을 비난하는 것과 관련될 경우 이러한 건강강조표시는 금지되어야 한다.

### 7.3

강조표시된 효과가 식품의 성분에서 기인한 경우에는 그 강조표시의 주가되는 해당 식품성분을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공식 실험방법이 존재하여야 한다.

### 7.4

소비자 식습관 및 식사습관에 대한 건강강조표시의 효과를 모니터하여야 한다.

### 7.5

건강강조표시를 가지고 있는 식품의 표지 및 표시에는 다음과 같은 [최소]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7.5.1 건강강조표시의 대상이 되는 식품의 영양소 또는 기타 성분의 함량표시

7.5.2 가능한 경우, 대상집단에 관한 정보

7.5.3 가능한 경우, 강조표시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식품사용방법에 관한 정보

7.5.4 가능한 경우, 취약집단에게 해당 식품사용방법에 관한 조언 및 해당식품의 섭취를 피할 필요가 있는 집단에 대한 조언

[7.5.5 필요한 경우 해당식품의 최대안전섭취량]

7.5.6 영양표시

별첨 5

### 주요의제 관련 전문번역본

#### 생명공학 기술응용식품의 표시에 관한 권고 초안(의제 5)

#### Section 2 : 용어의 정의 및 Section 4 : 포장식품의 의무표시사항

- 당 분과위원회는 제23차 총회에서 Section 2 & 4에 관한 개정초안이 5단계로 채택되었으며 그후 각국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6단계로 회람되었음을 보고함. 또한 캐나다 주재로 구성된 Working Group 회의에서 Section 5 부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Section 5와 관련된 Section 2 부분에 대한 개정안을 제안하였음을 보고함. Working Group에서 작업한 문서는 CX/FL 00/6으로 당 분과위원회에 제출되었음.
- “현대 생명공학” 용어 사용과 관련하여 당 분과위원회는 논의의 초점이 되는 유전자변형 및 유전자재조합외에 이 용어가 의미하는 기술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Section 2 및 제목부분에 사용된 “현대 생명공학기술응용 식품 및 식품첨가물”이라는 단어를 “유전자변형/유전자조

합과 같은 특정 기술로 생산된 식품 및 식품첨가물”로 바꾸기로 동의함. 당 분과위원회는 “유전공학기술응용”的 팔호를 삭제하기로 동의함.

- 당 분과위원회는 각국이 제출한 의견과 생명안전성협약의 최종문서를 고려하여 세포융합에 관한 두가지 예시문의 팔호를 삭제하기로 함.
- “유전자 변형/재조합 생명체” 용어 사용과 관련하여 많은 대표단 및 기구들은 소비자들은 “재조합”보다는 “변형”이라는 단어를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변형”이라는 용어사용을 지지함. 반면, 다른 대표단들은 현재 그들 국가에서 사용중인 “재조합” 용어를 더 선호함. 당 분과위원회는 각국의 상이한 상황을 고려하여 두가지 용어를 다 존치하기로 결정하고 팔호를 삭제하기로 함.
- “더이상 동등하지 않은/상당히 다른”의 용어정의와 관련하여 많은 대표단들은 이 문장은 Section 5의 규정과 상당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Section 5를 논의하기 전에 이 용어 정의 설정 필요성과 정확한 뜻에 관하여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언급함. 몇몇 대표단과 업체 및 기구들은 이 문장을 삭제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그 이유는 기존식품 또는 첨가물과는 관계없이 유전공학기술을 응용한 모든 식품에는 표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다른 대표단들과 업체 및 기구들은 특별한 표시가 요구되는 식품 및 원재료는 상당히 다른 경우에만 필요하므로 이 문장을 존치할 것을 지지함. 당 분과위원회는 팔호로 하여 이 문장을 존치하기로 동의함.
- 몇몇 대표단들은 Section 2의 개별 정의가 필요한 것은 Section 5의 규정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Section 2 & 5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밀접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논의 단계를 동일하게 진행하여야 한다고 지적함.
- 당 분과위원회는 Section 4.2.1.4항에 목록화되어 있는 제품에서 유래된 알레르겐 표시에 관하여는 어떠한 이견도

없다고 보고 일반규격에 새로운 항으로 추가하여 8단계로 상정하는데 동의함.

### 유전자변형/유전자조합과 같은 특정 기술로 생산된 식품 및 식품첨가물 표시에 관한 권고초안의 현황(포장식품표시에 관한 일반규격개정안-Section 2 & 4)

- 당 분과위원회는 Section 4.2.2에 대한 수정안을 제24차 총회채택을 위하여 8단계로 상정하기로 함.
- 당 분과위원회는 본 회의에서 논의한 결과로 수정된 Section 2에 대한 개정안은 각국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6단계로 다시 회부하기로 함(Appendix V 참조).

### Section 5 : 부가적인 의무표시사항

- 당 분과위원회는 지난 회의에서 구성된 Working Group이 Section 5에 관한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Section 5에는 2가지 Option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함. 첫 번째 Option은 생명공학기술용식품이 조성, 영양가, 사용방법이 기준제품과 상당히 다른 경우에만 표시하는 것이며 두 번째 Option은 유전자변형/재조합체로 구성 또는 포함하는 식품 및 식품원재료 또는 유전자변형/재조합체를 포함하지는 않지만 유전공학기술로 인한 단백질 또는 DNA를 포함하는 식품 및 식품원재료에 대해서는 그 생산방법을 표시하는 것임. 당 분과위원회는 Working Group의 장인 Mr. G. Reasbeck과 Working Group 회원국에게 고마움을 표시함.
- 몇몇 대표단과 업저버 기구들은 생산방법에 관한 정보보다는 변화된 식품의 조성, 영양가,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Option 1을 지지함.
- 많은 대표단과 업저버 기구들은 특정 조건으로 생산된 방법을 표시하는 Option 2를 지지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표

시가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할 권리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임.

- 몇몇 대표단은 식품의 모든 유통과정에서 의무표시는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표명함. IFOAM은 제품의 유통경로 분석 및 표시추적 과정 이외에 실험분석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함.
- 미국대표단은 시행방법, 비용, 소비자 인식등 생명공학기술용식품의 표시로 인한 모든 사항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으며 당 분과위원회가 의무 표시규정을 결정하기 이전에 이러한 사항들을 주의깊게 고려하여야 한다고 제안함. 또한 개발도상국들은 생명공학기술용식품 표시에 관한 규정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기술적인 문제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함.
- Option 2의 threshold level과 관련하여 몇몇 대표단들은 Codex 시료채취분과위원회(CCMAS)가 분석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지적함. 생명공학기술용식품에 관한 정부간 특별작업단은 내년회의(2001년 3월)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함. 당 분과위원회는 Codex내의 조직간의 긴밀한 공조작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으며 생명공학기술용식품 및 식품원재료를 검출 또는 확인하기 위한 분석방법에 관한 연구를 CCMAS에 요청하기로 결정함. CCMAS의 의장 Dr. Biacs (헝가리)는 CCMAS는 다음회의(2000년 2월)에서 다른 국제기구들이 이미 수행한 작업들을 고려하여 이 문제를 고려할 준비를 할 것이라고 답함. 정부 및 국제기구들이 CCMAS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공람문서를 희망할 것임. 생명공학기술용식품에 관한 Task Force는 추적가능성에 관하여 프랑스가 준비한 논의문서를 고려할 것이라고 보고함.
- CI, RAFI, IACFO가 지지한 노르웨이 인도대표단은 유전자재조합을 생산된 모든 식품 및 식품원재료는 의무적

- 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당 분과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제안도 계속하여 고려하여야 한다고 표명함. 표시는 제품이 기존식품과 비교하여 그 특성등이 변화되었거나 유전공학으로 인한 단백질 또는 DNA가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또한 이러한 표시방법만이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기술에 대한 소비자들의 확신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함. 인도대표단은 현재 인도는 이러한 방법을 근거로 한 새로운 법률을 마련중이라고 보고함.
- 일본대표단은 Option 2의 여러 가지 사항들은 가공식품의 일반규격의 의무 표시사항을 개정하는 것보다는 유기가공식품의 생산, 가공, 표시, 판매에 관한 지침서의 경우와 같이 독립된 지침서로 설정할 수 있다고 제안함. 또한 Option2의 규정들은 threshold level, 표시방법, 표시예 등 너무 광범위한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적하고 이러한 일본의 접근방법은 회원국마다 이러한 개념을 적용하는데 있어 융통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함. 이러한 제안은 몇몇 대표단들이 지지하였음.
  - 당 분과위원회는 많은 회원국들이 현재 소비자들에게 보다 나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생명공학기술응용식품의 표시에 대한 법률마련을 고려중이며 당 분과위원회가 국제적 조화를 위하여 이 문제에 관한 논의를 계속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함.
  - 당 분과위원회는 회원국들간의 의견이 상이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본 개정초안을 3단계로 다시 회부하기로 결정함. 또한 캐나다가 주재하는 Working Group의 작업을 계속하기로 하고 이 작업을 지침서로 개발한다는 일본의 제안에 의하여 Option 1 & 2를 결합시키는 작업을 하기로 동의하였으며 포괄적인 표시에 관한 노르웨이 및 인도이 제안도 고려하기로 함. 또한 Working Group은 미국등이 제기한 문제점을 포함 본

회의에서 논의된 표시와 관련된 주요한 문제점들을 고려할 것임.

#### 유전자변형/유전자조합과 같은 특정 기술로 생산된 식품 및 식품첨가물 표시에 관한 권고초안(포장식품표시에 관한 일반규격개정안-Section 5)

- 당 분과위원회는 Working Group에서 문서를 재작성하기 위하여 3단계로 다시 회부하기로 하였으며 Working Group은 회원 및 다음회의에서의 논의를 위하여 수정된 문서를 작성할 것임.

#### 건강강조표시 사용에 관한 권고 초안(의제 8)

- 당 분과위원회는 제27차 회의에서 본 작업에 대한 논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Working Group을 마련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함. Working Group 회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지난 3월 캐나다, 프랑스, 영국, 미국으로 구성된 소규모 drafting group은 본 권고 초안(Appendix VII, ALIMORN 99/22A)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였음. 이 검토안은 이번 회의 바로전에 개최된 Working Group 회의의 논의문서로 사용되었음.
- Working Group을 주재한 Dr M. Cheney(캐나다)는 Working Group에서 논의결과 도출된 개정안(CRD 34)를 당 분과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Working Group에서 논의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항들에 관하여 설명하였음: 1) Working Group은 네모안의 서문 및 '건강강조표시'의 정의부분에 합의, 2) "영양소기능강조표시"를 영양 강조표시에서 삭제하고 건강강조표시에 포함시키기로 함, 3) "질병발생위험감소강조표시" 및 Section 7의 조항들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함. 또한

- 본 작업은 기준의 영양강조표시사용에 관한 지침서를 개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 몇몇 대표단들과 기구들은 건강강조표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는데 그 이유는 적절한 소비자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건강강조표시가 소비자를 상당히 오도, 혼동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힘. 인도 대표단 등은 건강강조표시에 관한 규정은 각국마다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건강강조표시에 관한 국제규격 설정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언급함. 말레이시아 대표단은 당 분과위원회가 CCNFSDU로 하여금 본 개정 초안을 검토하고 개정안에 정의되어 있는 건강강조표시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을 제안함. ICGMA는 서문에 언급되어 있는 국가 보전정책은 국제교역의무사항과 일치하여야 한다고 지적함.
  - 향상된 기능강조표시(section 2.2.2)의 정의와 관련하여 몇몇 대표단은 이 정의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므로 문장 전체를 블랭킷으로 할 것을 제안함. 미국 대표단은 section 2.2.2의 일부분이 블랭킷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표시에도 블랭킷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당 분과위원회는 이 제안에 동의하였음. 많은 대표단들은 질병 발생위험감소강조표시(section 2.2.3)와 관련하여 본 건강강조표시를 2가지로 표시하여야 하는 규정과 예방관련 강조표시와의 관련성에 관한 좀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함.
  - 많은 대표단과 기구들은 Section 7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세부내용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음. IACFO는 건강강조표시는 과학적으로 합의된 사항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Working Group이 소비자 인식, 실행 등과 관련된 문제들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권고함. Section 7.1 건강강조표시의 조건과 관련하여 “과학적 증거”, “일반적으로 수용가능한 과학적 자료” 등과 같은 개념/용어등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설명과 논의가 필요함. 건강강조표시를 증명하기 위한 ‘상당한 과학적합의(significant scientific agreement)’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됨. 또한 “상당량(reasonable quantity)(Section 7.1.1.)” 또는 “상당량 및 고(significant and high source)(Section 7.1.5)”에 해당하는 기준치를 좀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됨.
  - Section 7.3과 관련하여 “강조표시의 대상이 되는 식품구성성분을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효한 검사방법”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음. 헝가리 대표단은 이러한 유효한 검사방법은 CCMAS 가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고 제안함. Section 7.4와 관련하여 건강강조표시의 영향을 모니터 하는 주체와 방법에 대한 좀더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Section 7.5(표지에 표시하여야 하는 내용)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좀더 명확한 설명과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1) 표시의 정확성 및 적합성을 확인하는 담당기관, 2) Codex 영양표시에 관한 지침서를 인용에 대한 필요성, 3) “대상집단”과 관련하여 CCNFSDU가 설정한 규격과 일치시킬 필요성, 4) 최대 안전섭취량에 관한 규정과 Section 7.2, 7.5.3, 7.5.5의 관련사항들을 통합시킬 가능성
  - 당 분과위원회는 건강강조표시에 관한 논의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으며, 공중보건에서 본 문제의 중요성, 소비자들의 혼동,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정하였음.

#### 건강강조표시 사용에 관한 권고 초안의 현황(건강 및 영양강조표시 사용에 관한 지침서 초안)

○ 당 분과위원회는 CRD 34로 제출된 권고초안에 대한 더 많은 의견 및 논의를 위해 다시 3단계로 회부하는데 동의하였으며(Appendix VIII 참조), 캐다나가 주재하는 Working Group 회의를 내년회의 바로전에 개최하기로 함. 또한

본 권고초안을 기준의 영양강조표시 사용에 관한 지침서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목은 “건강 및 영양강조표시 사용에 관한 지침서”로 개정되어야 함.